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·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(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